

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68호

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6월 30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 06. 30. ~ 2023. 07. 13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노선태	1960.○.30.	0178200274100004030	₩31,860,000	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칠봉길 ○○
2	장석원	1977.○.06.	0178200274100004037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본길 ○○
3	장기훈	1956.○.06.	0178200274100004020	₩31,860,000	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4로1길 ○○
4	최경호	1977.○.29.	0178200274100004038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동구 을하동로 19길 ○○
5	오준철	1969.○.06.	0178200274100004048	₩31,860,000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○○
6	최미영	1986.○.19.	0178200274100004049	₩31,860,000	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94번길 ○○
7	오연실	1968.○.30.	0178200274100004050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○○
8	이원욱	1973.○.06.	0178200274100004041	₩31,860,000	경상북도 안동시 중앙시장 2길 ○○
9	손성재	1962.○.04.	0178200274100003997	₩31,860,000	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1안길 ○○
10	정선덕	1960.○.18.	0178200274100003994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길 ○○
11	라상택	1967.○.23.	0178200274100004014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2길 ○○
12	오정훈	1984.○.16.	0178200274100003649	₩31,860,000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259번길 ○○
13	이진성	1970.○.25.	0178200274100005889	₩18,000,000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4가길 ○○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7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으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